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			`			
	담당 부서	디지털금융검	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혜은 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중요단말기의 범위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구성이 적법한지	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반출, 인터넷 접속,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합니 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(이하 '감독규정') 제12조 제3호) ○ 「감독규정」에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중요단말기를 지정하실 있으며, 동 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중요 단말기는 외부 반출, 인터 접속,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하여야 합니다. ② 금융회사는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하여야 합니다. (「감독규정」제15조 제1항 제5호) ○ 귀 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,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 접속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단말기는 「감독규정」제15조 제1항 제5호의 단말기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망분리의 대상입니다. ○ 또한, 동 단말기가 중요단말기로 지정되어 있다면 「감독규정」 제12조 제3호 따라 그룹웨어 접속 등도 금지하여야 합니다. 						지정하여야 합니다. 있지 않아 업무 및 말기를 지정하실 수 는 외부 반출, 인터넷 개발, 보안 목적으로 터 물리적으로 분리 및 테스트 시스템에 감독규정」제15조의 의 대상입니다.

- 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.7 제1점 제2점 차고)
- 제11조제1항 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 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